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위법행위의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

-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나.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은 벌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 발굴면적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1~5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의 [별표 3] 개정)
-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굴현장 안전사고 발생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허가받은 발굴면적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기간을 10일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①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위법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행위를 하는 자

3. 위법행위 내용

4.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위법행위 신고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2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① 수사기관이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5(신고포상금)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문화유산 평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기준 및 지급액 등 세부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u>2,500만원</u> +(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u>5천만원</u> 이상인 경우	<u>2,000만원</u>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u>2천5백만원</u> 이상인 경우	<u>1,500만원</u>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u>1천250만원</u> 이상인 경우	<u>1,000만원</u>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u>500만원</u>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 취소 등) ①~③ (생략)	제9조(허가 취소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발굴현장 안전사고 발생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u>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생략)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u>다만, 허가받은 발굴면적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발굴기간을 10일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발굴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신 설>

제28조의2(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①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위법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행위를 하는 자

3. 위법행위 내용

4.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위법행위 신고의 처리)

①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28조의4제2항

<신 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① 수사기관이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2. (생략)

<신 설>

3. (생략)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5(신고포상금) ① 법 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문화유산
평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기준
및 지급액 등 세부절차는 국가
유산청장이 고시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의 표본조사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연 락 처	(042) 481 - 3133, 3135